#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
# 검 토 보 고 서

**1. 제 출 자 : 성주군수**

**2. 제정이유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2011.7. 14 공포, 2011.10.15시행)됨.

○ 이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○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상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 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함(안 제3조)

- 제외대상
  -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비용추계의 방법(안 제4조)

- 재정수반요인,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
-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

○ 비용추계의 기간(안 제5조)

-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(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)

**4. 관련법률**

○「국가재정법」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

○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 3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

○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,

○ 비용추계의 방법과 비용추계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